

○出席公務員

區廳長	李慶培
副廳長	潘尙均
總務局長	河永基
財務局長	朴贊守
市民局長	姜信一
都市整備局長	申水木
建設局長	姜昌求
總務課長	金石鳳

(參照)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3. 5. 17.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93. 3. 26.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93. 3. 31
- 다. 상정일자: 제16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3. 5. 17) 상정, 제3차위원회('93. 5.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세무1과장 최영명)

- 가. 제출이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1992. 9. 30 총무처 고시 제92-2호)제2항 및 동기준표중 분류번호 제21-128호의 1992. 10. 1일자 시행에 따라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 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117호)제3조의 별표 내용중 종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조례 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종목일부 개정

-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개정
- "시세완납 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개정
-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서,

- 1992. 9. 30 총무처 고시 제92-2호로 공포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 제2항 및 동 기준표중 분류번호 제21-128호의 시행과
- 지방세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김유현 위원): 지방세징수유예증명이란 무엇인가?
- 답변(세무1과장 최영명): 회사가 부도직전에 있다든지 하는 법에 의한 사유로 지방세를 6개월간 유예하여 주고 또한번의 유예를 할 수 있어 합계 약 1년의 기간내에서 지방세 징수유예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으로서 구청에서 발급함.
- 질의(윤동현 위원): 현재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시행되고 있는가?
- 답변(세무1과장 최영명):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음.
- 질의(윤동현 위원): 현재 실시되고 있으면 의회 의결은 형식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건은 의회 의결 후 시행되어야 하는데 의결되기전 시행하는 이유는?
- 답변(세무1과장 최영명): 대부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통사항임.
- 질의(윤동현 위원): 1차 심의시 지적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냐는 질문에 다시한번 설명을 해달라
- 답변(세무1과장 최영명): 지난 17일 답변이 충실치 못하여 물의가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추가사항이 징수유예증명으로서 시행을 위한 제반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잘못 답변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현재 징수유예증명은 1건도 발급한 사실이 없음.
- 질의(윤동현 위원): 세무1과장의 답변을 재무국장이 확인해주기 바람.
- 답변(재무국장 박찬수): 기히 시행한다는 답변은 시행준비를 완료한 사항을 잘못 답변하였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하겠으니 이해바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1993년 3월 26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사무처리 기준표(1992. 9. 30 총무처고시 제92-2호)제2항 및 동기준표중 분류번호 제21-128호의 1992. 10. 1일자 시행에 따라 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3조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7호)제3조의 별표 내용중 종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개정 주요골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제3조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1.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중 종목일부 개정

- “(1)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개정
- “(2)시세완납 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개정
- “(3)재산세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

3. 개정근거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제23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1992. 9. 30 총무처고시 제92-2호)

○세정13400-232호(93. 3. 5)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6. 관련근거 법규 : 별첨
- 7.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의 종목란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중 “(1)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1)세목별 납세증명”으로, “(2)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2)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명”으로, “(3)재산세 과세증명”을 “(3)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8종)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생략”				“현행과 같음”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 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 증명	1건	350원		(1) 세목별 납세 증명	1건	350원	
(2)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 증명	1건	350원		(2) 지방세완납 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 유예증명	1건	350원	
(3) 재산세 과세 증명	1건	350원		(3) 세목별 과세 증명	1건	350원	
(4) “생략”				“현행과 같음”			